

풍피두분관 유치를 위한 비밀협정서를 파헤친다.¹⁾

남송우(부경대 명예교수)

1. 부산시 문화 행정의 난맥상

부산시가 그 동안 비밀리에 풍피두 분관 유치를 위한 협상을 프랑스 풍피두 미술관 측과 진행을 해왔다. 그랬기에 부산지역 미술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시민들은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최종 협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진정 부산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풍피두 분관 유치를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 동안 부산시가 추진해온 분관 유치를 위한 문화행정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문화가 갈수록 지역소멸이라는 현실로 인해 점차 쇠락해져가고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라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해서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지자체가 문화정책을 입안하면, 이를 부산광역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시도 이 법에 따라 부산지역문화진흥조례를 2019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풍피두 분관 유치 같은 시비가 엄청나게 드는 사업은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심의과정도 필수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문화예술 사업인 경우는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법 이전의 상식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풍피두 분관 유치건은 풍피두와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은 모두 생략되었다. 풍피두 분관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22년 1월 19일 박 시장이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에 갔을 때, 풍피두센터 관장과 만나 부산분관 설립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면 이후에 이를 공론화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적은 없으며, 오직 시 내부 관련 부서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를 진행해왔다. 행정 절차상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했기에 이 안건을 2024년 7월 23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안하여 그것도 비공개로 심의한 것이 드러났다. 비공개 심의의 이유는 풍피두 측과 비밀리에 협의하도록 합의를 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럼 도대체 풍피두 측과 비밀 협상한 내용이 무엇이기에 부산시가 이렇게 문화행정을 파행적으로 집행했을까? 이 궁금증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풍피두 측과의 협상 내용 문건이 있어야만 파악할 수 있다. 시가 이를 비밀 문건으로 대외비로 하고 있었으니 굳게 잠긴 자물쇠를 열 열쇠를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 부산시 국감 자리에서 풍피두와의 양해각서문건이 이소영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다. 비밀문서이기에 공개할 수 없었던 문건이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이 의원 보좌관이 확보해서 전달함으로써 시 행정의 난맥상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한다.

2. 굴욕적인 협상 문건의 진상/우리가 프랑스의 속국인가?

1) 이 글의 텍스트는 2024년 7월 3일 자로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세계적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이다. 이 문건은 대외비로서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4년 10월 14일 부산시 국정감사 때 이소영 의원이 풍피두 분관 유치 문제를 다루면서 공개되었다. 이때 공개된 문건을 입수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부산광역시와 조르주 폼피두 국립 예술문화 센터 양해 각서의 내용은 서문,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설명, 제3조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일 및 기간, 제5조 재무조건, 제6조 기밀유지/소통, 제7조 종료, 제8조 양해각서의 구성요소, 제9조 언어와 준거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부를 정본으로 간주하며, 파리 또는 부산에서 서명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중 중요한 몇 부분만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사안은 폼피두 센터와 부산시는 대중 개관일로부터 5년 동안 잠정적으로 폼피두 센터 부산이라 칭하는 문화시설을 부산에 개관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는 아래 4조에 명시된 기본계약을 통해 대중 개관일로부터 5년 후 파트너십 연장 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단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두 기관 간의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년 이후 연장의 문제는 4조에 명시된 기본계약을 통해 연장 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박 시장은 기자회견(2024년 7월 31일)을 통해 “폼피두센터 부산은 서울과는 달리 영구적 시설입니다”(부산일보, 2024년 8월 1일자)라고 밝힘으로써 협약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시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보도가 언론에 공개되자 먼저 폼피두 분관을 유치해서 개관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서울의 한화문화재단은 부산시에 항의를 했다. 박 시장의 발언 속에는 서울 한화의 폼피두와의 계약은 단회적으로 혹은 단 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화의 항의에 화들짝 놀란 부산시는 한화문화재단에 급하게 사과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과 공문의 주 내용은 언론이 잘못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박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과 언론 보도가 다르기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언론사에 통보를 하지도 않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지도 않았다. 이를 아주 사소한 사안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부산시가 오직 폼피두 분관 유치만을 위해 어떠한 비상식적인 현실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 2조 <사업설명>에서 중요한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2.1 폼피두 센터 부산은 소유자인 부산시가 확인하고 제공한 총 표면 면적 약 15,000㎡ 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간(이하 “미술관 건물”이라 한다)을 5년 동안 점유한다. 미술관 건물의 임시 계획 및 사업 진행에 할당된 공간의 위치는 본 양해각서의 부록 1에 첨부되어 있다.

미술관 건물 내 전시 예정인 폼피두 센터 소장품에 해당하는 작품의 안전과 최적의 보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폼피두 센터 담당 부서가 수립한 세부 계획에 의거하여 부산시 소유 자산인 미술관 건물은 재개발될 예정이며, 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책임은 부산시가 단독적으로 부담한다.

<2.1>의 협의 내용 중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은 “폼피두 센터 부산은 소유자인 부산시가 확인하고 제공한 총 표면 면적 약 15,000㎡ 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간(이하 “미술관 건물”이라 한다)을 5년 동안 점유한다.”는 부분이다. 폼피두 측이 부산에 건립되는 분관에 대해 점유권을 가진다는 말이다. 점유권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한다. 이러한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따라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로서 물건을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본권과

구별된다. 예컨대 A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A의 그 물건에 대한 점유는, (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소유자로서의 점유),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경우(임차인으로서의 점유), (다) 타인으로부터 그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수치인으로서의 점유), (라)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인으로서의 점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고 A의 그러한 사실적 지배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이다.

이러한 협약상태이기에 부산시는 풍피두 본관을 지어 풍피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풍피두가 이렇게 완전히 자신들의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미술관 건축에 필요한 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책임은 부산시가 단독적으로 부담한다고 협약되어 있다. 풍피두는 부산에 본관을 설치하면서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냥 공짜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도록 협약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풍피두는 <제2.1조>에서 “명시된 미술관 건물을 점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관 내에서 계약 기간 동안, 더 제한된 규모를 포함해, 부산시는 본 사업과 유사하며, 장기적으로 여러 회 개최되는 전시를 위한 국내외 타 문화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못박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점유했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은 풍피두가 가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풍피두 센터는 계약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파트너십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화와 맺은 계약은 “풍피두 센터는 양해각서 체결일 기준 서울에 이미 존재하며 풍피두 센터 부산 사업과는 다른 풍피두 센터 파트너십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붙여둠으로써 한국 내에서의 두 개의 풍피두 본관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풍피두가 오직 본관 유치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협약 내용을 보더라도 부산시가 처음 발표한 한화와 풍피두와의 계약이 끝나면 부산 풍피두 본관이 단독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은 엉터리였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일방적인 협약내용은 <2.5> 내용에도 이어진다.

2.5 사업의 기본 구상 내에서 풍피두 센터의 작품에 대해 부산시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삼는 운송 작업 전반에 대한 재정적·물류적 사항은 부산시가 담당한다. 작품 운송은 예술 작품 운송의 국제적 공조 및 조직에 전문화된 평판이 좋은 단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되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풍피두 센터 작품의 보험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양 당사자는 동의한다. 선정된 운송 업체에 대해 모든 운송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풍피두 센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양 당사자는 사업 기간 동안 풍피두 센터 부산을 위해 구상된 기획전 전체 혹은 일부가 풍피두 센터에 의해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타 문화시설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위 내용을 분석해보면 부산 풍피두 본관에 전시할 작품의 운송에 대한 모든 재정적·물류적 사항은 전부 부산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실질적인 책임은 부산시가 지면서 운송작업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풍피두 센터 작품의 보험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으며, “선정된 운송 업체에 대해 모든 운송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풍피두 센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었다. 이는 철저히 모든 것은 풍피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그 실질적인 재정적·물류적 사항은 전부 부산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는 사업 기간 동안 풍피두 센터 부산을 위해 구상된 기획전 전체 혹

은 일부가 풍피두 센터에 의해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타 문화 시설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협약함으로써 풍피두는 마음대로 자신들의 기획전을 다양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고 있다. 이러한 협약조건이라면 부산시는 독점적인 기획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다 사라지고 만다.

다음 제5조인 <재무조건>을 살펴본다.

5.1 사업의 기본 틀 내에서, 양 당사자는 부산시가 세금을 제외하고 사백만유로(€4,000,000)를 매년 풍피두 센터에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 즉, 계약 기간 동안 총 지불 금액은 이천만유로(€20,000,000)이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본 양해각서 제2.3조에 명시된 상설전 및 기획전과 교육 활동 주관을 위한 작품 제공 및 기여에 대한 비용 연간 이백만유로(€2,000,000)
- 사업을 위한 풍피두 센터 상표 사용권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연간 브랜드 사용료 이백만유로(€2,000,000)

이러한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의 지불은 부산시가 책임진다는 데 동의한다.

지불 일정은 기본 계약에 상세히 명시한다.

상기 협약내용을 보면 연간 풍피두에 지불하는 공식적인 금액은 120억이다. 이 금액은 그 동안 부산시가 내세운 예산 금액과는 차이가 난다. 부산시는 로열티를 연간 30-50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금액은 위의 협약내용에서 제시된 예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 문제는 모든 지급하는 예산에 대한 세금을 전부 제외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연간 예산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의 지불도 부산시가 책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도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비용은 일방적으로 부산시가 부담을 하고 풍피두는 앉아서 돈만 챙기는 꼴로 전략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언급된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및 관세를 포함한 제5.3조에 명시된 파트너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산시가 직접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협의된 이외의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5.2>, <5.3>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5.2 상기 언급된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및 관세를 포함한 제5.3조에 명시된 파트너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산시가 직접 부담한다. 부산시에서 직접 지불하지 않는 비용의 경우, 풍피두 센터가 각 사업 시작 전에 해당 비용에 대한 예상 금액을 부산시에 제시한다. 풍피두 센터는 부산시에 증빙 서류를 제공한다.

5.3 기본 계약에는 작품에 대한 보험과 운송(특히 목상자 포장, 포장, 해체, 재포장, 반환 시 운송, 통관 절차 및 프랑스와 한국 영토로의 출입국 절차 등) 및 상기 제2.3조에 명시된 사업 중 상설전과 기획전, 문화 및 교육 활동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요소에는 풍피두 센터의 전문가들, 사업 관리 팀, 작품 운송을 관할하는 운송 업체의 업무를 위해 풍피두 센터에서 발생하는 지출 및 비용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지불은 부산시가 부담한다.

상기 언급된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및 관세를 포함한 제5.3조에 명시된 파트너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산시가 직접 부담할 뿐만 아니라, 풍피두 센터의 전문가들, 사업 관리팀, 작품 운송을 관할하는 운송 업체의 업무를 위해 풍피두 센터에서 발생하는 지출 및 비용도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있다. 이는 바로 풍피두 부산분관에서 전시를 위해 준비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부산시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부산풍피두 분관을 점유한 풍피두에 부산시가 모든 것을 다 갖다바치는 형국이다. 이러한 내용의 협약도 모자라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밀유지/소통>의 협약까지 내놓고 있다.

6.1 각 당사자는 본 협력의 일환으로 공동 계약 당사자와 관련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양 당사자는 또한 본 양해각서에 등장하는 모든 조항 및 첨부 문서에 관하여 상호 비밀유지 의무에 구속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양해각서의 존재, 서명, 목적 및 조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3자 또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를 각 조건의 기밀성을 통지받고 수용하는 직원들과 조사, 감독, 허가 또는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규제 당국 및 모든 관할 법원에 공개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위의 기밀 협약을 들여다 보면,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피두는 미술관 분관을 설치하고, 부산시는 이를 유치하면서 도대체 왜 공개할 수 없는 기밀 정보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양해각서의 존재, 서명, 목적 및 조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3자 또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점이다. 양해각서에 대한 어떠한 내용(존재, 서명, 목적 및 조건)도 제3자 또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양해각서의 존재 자체를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 대중들은 양해각서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협약이 21세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스러운 일이다. 얼마나 엄청난 협약이기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일반 대중들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다. 달리 말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밀 협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단순한 의구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점은 확실해보인다. 협상 대상인 두 주체가 분명 각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에 이런 기밀 협약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먼저 풍피두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풍피두는 현재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어떻게든 분관을 하나라도 더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풍피두는 분관을 설치하면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협상하는 대상들과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길일 것이다. 정해진 상품의 가격처럼 분관을 통해 똑 같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나 대상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조건으로 협상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최고의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설치된 분관들이 풍피두에 지불하고 있는 예산이 각기 다른 것은 이러한 풍피두의 상업적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부산시의 경우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시설과 운영경비를 부산시가 담당해야 하는 입장을 공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드는 풍피두 분관 유치를

위한 협약내용을 만약 일반 대중(부산시민)들에게 공개했을 때,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かを 생각해 본다면 부산시로서는 풍피두가 제안하는 비공개 기밀협약이 쉽게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지름길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 필자 소견으로는 아무리 궁리해보아도 이런 이유 외에 달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고는 그 동안 부산시가 비밀리에 추진해온 풍피두 분관 유치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 협약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서로 협의를 했고, 그런 이유로 부산시는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졌기에 협상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 조항은 서로 합의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이러한 기밀 유지에 대한 유예적인 단서로 “이 양해각서를 각 조건의 기밀성을 통지받고 수용하는 직원들과 조사, 감독, 허가 또는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규제 당국 및 모든 관할 법원에 공개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라고 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협약서 문건을 요구했지만 기밀 조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건강부회했다. 또한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대한민국 법률,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혹은 부산시의 어떠한 관련 조례에 따라 본 양해각서를 부산광역시의회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개는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지만 부산시의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안하고 심의할 때는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심의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부산시장의 민낯이 드러난 꼴이 되었다. 부산시장의 말처럼 풍피두 분관의 유치가 부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문화정책이라면 시민들에게 왜 떳떳하게 드러내 공론화시키지 않는 것인가? 분명 부산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굳이 기밀 협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가? 여기에는 말 못할 사연이 깊이 내재해 있음이 분명하다.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풍피두 기밀 협약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비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 당장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라도 영원한 비밀은 없다. 밝힐 수 없다고 그렇게 외쳐대던 풍피두와의 비밀협약 문건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공개되었다. 언젠가는 모두 드러날 비밀들인 것이다. 그것이 하늘이 인간사에 내리는 순리임을 어찌하라.

기밀 협약도 문제지만 협약문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은 마지막 제9조에 보이는 <언어와 준거법>이다.

9.1 본 양해각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고 두 버전 모두 정본이다.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9.2 본 양해각서는 프랑스법에 따른다.

9.3 본 양해각서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이견은 당사자들이 수용한다고 선언하는 파리 국제 중재원 규칙에 따라 중재에 제출해야 한다.

위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양해각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가히 충격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양해각서이기에 기본적으로 각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왜 영어와 프랑스어로 양해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늘 주장하는 부산시가 영어 상용도시를 지향하기에 풍피두는 프랑스어로, 부산시는 영어로 작성하기로 한 것인가? 어떻게 국제관계의 협약문건에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는가? 참으로 궁금하다. 자국의 언어로 문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국의 문화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화의 뿌리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주권의 포기는 단순한 문화주권의 포기를 넘어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는 바와 다름없다. 그리고 한국어 문건이 없기에 훗날 어떤 문제가 생겼

을 경우 영문본을 우선하는 결과를 낼 것이다. 이는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굴욕적인 협약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것이 지자체의 수장이 독단적으로 맺을 수 있는 협약인가? 그 비정상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주종적인 협약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다. “본 양해각서는 프랑스 법에 따른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맺어야 하는 협약에서 한국법이 아닌 프랑스법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필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앞서 확인한 협약 내용들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산시는 일방적인 풍피두의 입장에 따르기만 한 부끄러운 주종관계의 협약임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서명란의 형식도 충격적이긴 마찬가지다.

서명란은 <조르주 풍피두 국립 예술문화 센터 회장 로랑 르 봉>이 위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이 아래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협약서에서의 당사자들의 서명은 동등하게 나란히 서명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만드는 것이 통례인데, 이 협약서 문건에는 서명자의 위치가 좌우 나란한 형태가 아니라 상하로 나뉘어져 있다. 원본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번역본만을 두고 본다면 원본의 양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왜 서명란의 형식마저 문제삼는가를 묻는 이가 혹 있을지도 모르겠다. 처음부터 굴욕적이었던 협약서가 마지막까지 굴욕적이었음을 이 서명란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사실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통용되고 있는 협약서들의 서명 위치를 알아보니, 협약자인 두 주체가 좌우로 나란히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상하로 서명이 된 경우도 있긴 했다. 그 경우는 상하 관계에 있는 두 기관 간의 서명인 경우였다. 이것이 프랑스 협약문서의 일반적인 서명 양식이라고 한다면, 분명 부산시는 프랑스 풍피두의 하부기관을 자처한 것이 틀림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협약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번 풍피두와의 비밀 협약은 스스로 문화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주종관계의 협약이란 점이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이 비밀협약 문서에 따라 풍피두 분관 유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여전히 부산시민들과의 어떠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시민의 혈세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부산시 문화행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집단 지성의 지혜를 모아 풍피두 분관 유치 진행부터 막아야 한다. 제7조에는 계약상 공익의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25년 12월 까지 기본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협약이 폐기될 수 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일어서야 할 때다.